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52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복기왕·유종군·오세희

용혜인 · 김원이 · 허종식

임호선 • 박민규 • 장종태

김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중 파면 등으로 직을 상실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이나 부속 시설의 반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 관저 등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기간 머무르면서 해당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을 동원하여 사적 만찬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적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에 명백히 해당되는 사례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관저 점유의 무제한 지속이 헌정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를 마치거나 그 직을 상실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권한 상실이 발생한 해당일로부터 일정 시한 내에 신속히

관저 등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 및 행정 지원은 공적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국가 권력의 퇴장에 관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관저 등의 반환 및 퇴거) ① 대통령이 그 직을 상실하거나 임 기를 종료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통령 관저 및 부 속 시설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관저 등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의 경호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전 절 보환 및 퇴거) ① 대통령이 그 직을 상실하거 나 임기를 종료한 경우 해당일 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통령 관저 및 부속 시설에서 퇴거하여야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관저 등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의 경호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	현 행	개 정 안
차, 지원 범위 및 내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0조(관저 등의 반환 및 퇴거) ① 대통령이 그 직을 상실하거 나 임기를 종료한 경우 해당일 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통령 관저 및 부속 시설에서 퇴거하 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관저 등에서 퇴거하 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의 경호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 차, 지원 범위 및 내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